

2026년 1차 기숙사형 청년주택 입주자모집



<SH 인터넷 청약>

2026. 6. 26.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2026년 1차 기숙사형 청년주택 입주자모집(2026. 6. 26.)

□ **기숙사형 청년주택**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에서 매입한 기숙사를 주거지원이 필요한 대학생 등에게 주변시세 대비 저렴하게 공급하는 임대주택으로 아래와 같이 신규입주자를 모집합니다.

- (기준일) 모집공고일은 **2026. 6. 26.(금)**이며, 이는 입주자격 및 순위요건의 판단 기준일이 됩니다.
- (중복신청 불가) 1인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 처리합니다.
- (신청유의) 공고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여 신청 과정에서 불이익(기한 내 서류 미제출 탈락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접수 및 서류제출을 완료하여야 하며 신청 후에는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신청 당시 입력한 전화번호 및 주소로 안내문을 전송 하므로 반드시 수신 가능한 연락처를 입력하기 바라며, 연락처 오기나 변경 등의 사유로 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 그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성별분리) 층별로 남성/여성을 분리하여 공급합니다. 신청 시 '공급주택목록'의 '성별구분'에 유의 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성별 교차 지원은 불가능합니다.
- (기숙사 운영규정 준수) 질서있는 공동생활을 위하여 개별 「기숙사형 청년주택 운영규정」에 따라 관리·운영됩니다. 따라서 입주자는 운영규정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고, 규정 위반시 계약해지 사유가 될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공고문 하단 '기숙사형 청년주택 운영규정' 참조)
- (예비자 자격) 예비자 자격은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까지 유지되고, **6개월이 경과한 다음 날(2027. 5. 20.)** 예비자 지위가 소멸됩니다.

■ 신청자격

공통	<p>공고일 현재(2026. 6. 26.) 무주택자(본인)인 미혼(현재 혼인 상태가 아님) 청년으로서 신청 순위별 기준을 충족하는</p> <p>① 서울특별시 소재 대학에 재학중인 대학생 및 대학원생(입학·복학 예정자 포함)</p> <p>② 19세 이상 39세 이하(1986.06.27.~2007.06.26. 출생자)인 사람</p> <p>* ②은 3순위에 한하여 신청 가능합니다.</p>
-----------	--

■ 입주순위

세부 요건	1순위	2순위	3순위
자격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대학생·대학원생 ① 수급자 가구 ② 차상위계층 가구 ③ 지원대상 한부모 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대학생·대학원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청년 (19세 이상 39세 이하)

※ 자세한 사항은 **2. 입주자 선정기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공급주택

■ 공급대상주택: 총 56호

○ 신규공급 : 56호

대상주택		유형	주택형	성별	공급호수	총 세대수	승강기/ 주차장
합계					56호		
강북구	T&K수유1 강북구 수유동 392-125 (삼양로 406)	임대형 기숙사	19BM	남성	28호	56호	있음/ 자주식 (지상)
			19BF	여성	28호 * 장애인호실 1호 포함		

* 장애인호실의 경우 장애인 우선배정 신청자에게 우선배정되며, 우선배정 신청자가 배정세대에 미달할 경우, 미신청자도 해당 주택에 배정될 수 있습니다.

- 동호, 면적, 개별호실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등 상세내역은 2. [주택목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별주택의 호실 구조 및 건물 전경 등은 3. [첨부] 도면 및 사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동일 주택형의 호실별 전용면적(m²)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승강기 및 기계식 주차시설이 운용되는 주택 등의 경우 위탁관리에 의한 관리비가 발생할 수 있으며, 발생 금액은 주택마다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관리업무(공용부분청소, 공과금 배분 등)는 외부위탁기관(관리사무소)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별도의 관리비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 층별로 남성/여성을 분리하여 공급하며 교차 지원이 불가합니다.
- 신규공급 대상주택은 신규 준공 및 매입 후 최초 입주자를 모집하는 주택이며, 재공급 대상주택은 기공급 주택에서의 미계약, 입주 중 퇴거 등으로 발생한 공실에 대해 신규 입주자를 모집하는 주택입니다.
- 임대료의 최대 80%까지 보증금으로 전환이 가능하며, 보증금의 최대 60%까지 임대료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 공급대상 주택의 가구, 전자제품 등 비품과 부대시설은 주택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첨부] 도면 상 표기된 비품은 건축 설계상 참고용으로, 비품의 구비 여부는 주택의 사정에 따라 상이합니다. 비품 구비 여부는 당첨 후 주택 사전점검 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급대상 주택 중 일부 주택에는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커뮤니티실 공간이 존재하여 공동체 활동 운영 등 입주자 자치활동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표1)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구분	내용	
임대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년, 재계약 4회 가능 (입주자격 충족 시 10년 거주 가능) ※ 소득 조건을 제외한 모집공고일 현재의 입주자격(무주택자, 대학생·대학원생·청년)을 재계약 시점에 유지하여야 갱신계약이 가능합니다. ※ 입주 후 신청유형이 변경(대학생·대학원생 ↔ 청년)되어도 재계약이 가능하나, 변경된 유형에 따른 임대조건으로 재계약을 진행해야 하며 대학생·대학원생의 경우 자격을 증빙해야 합니다. 	
임대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순위(감정평가액의 30%)와 2·3순위(감정평가액의 50%)의 임대조건을 차등 적용합니다. • 청년은 기본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적용하고, 대학생·대학원생은 순위에 따라 임대보증금 100만원 혹은 200만원으로 별도 적용합니다. • 임대료에 부가가치세가 별도 부과됩니다. 	
상호 전환 제도	<p>월임대료를 보증금으로 전환 보증금 ↑, 월 임대료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환비율 : 주택에 따라 표시된 월 임대료의 최대 80%까지 보증금으로 전환가능 • 전환요율 : 연 6.7% • 낮출 월임대료 금액 X 12(개월) ÷ 0.067(6.7%) = 추가 임대보증금 예시) 임대료 10,000원 당 보증금 약 180만원 추가납부
	<p>보증금을 월임대료로 전환 보증금 ↓, 월 임대료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환비율 : 표시된 보증금의 최대 60%까지 월임대료로 전환가능 • 전환요율 : 연 2.5% • 낮출 임대보증금 금액 X 0.025(2.5%) ÷ 12(개월) = 추가 월임대료 예시) 보증금 1,000,000원 당 월 임대료 약 2,000원 매월 추가납부 ※ 별도 임대보증금을 적용받는 대학생·대학원생은 전환 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호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 기본조건으로 계약체결 후 잔금에 대해서 신청이 가능하며, 전환유형에 관계없이 연1회 신청가능(전환신청 후 1년 이내 재신청 불가) • 상호전환 신청은 기본조건으로 계약 이후에 관할 주거안심종합센터로 유선 요청 	

* 재계약 시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전환이율, 하한기준액 등은 실제 적용 시점에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관리업무(공용부분청소, 공과금 배분 등)는 외부위탁기관(관리사무소)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별도의 관리비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2

입주자 선정기준

■ 신청 자격

공고일 현재(2026. 6. 26.) 무주택자(본인)인 미혼(현재 혼인 상태가 아님) 대학생, 대학원생, 청년으로서 신청순위 별 소득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기혼자, 외국인, 재외국민은 신청 불가합니다.

■ 신청 유형

• 아래의 신청 유형 중 입주자모집공고일(2026. 6. 26.) 현재 주택공급 신청자 본인에 해당하는 유형 한 가지를 선택하여 신청

※ 순위별 소득 및 자산 기준 등을 충족하더라도, 신청 유형 관련 세부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서류심사 시 입주자격 부적격으로 판정되므로 **세부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신청 유형을 선택**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학생 및 대학원생	서울특별시 소재 대학에 재학중인 대학생 및 대학원생 (입주지정기간만료일 이후 최초 도래 학기 복학 및 입학예정자 포함)
청년	만 19세 이상 ~ 39세 이하인 자

• 대학생 · 대학원생 유형 관련 세부 기준

인정 대학교 및 대학원	<input type="checkbox"/> 「고등교육법」 제2조1호부터 제4호까지, 제2조제6호, 제2조제7호에 따른 학교(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 등) <input type="checkbox"/> 「평생교육법」 제31조 제4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고등기술학교(전공대학) <input type="checkbox"/>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 <input type="checkbox"/> 「고등교육법」 제29조2 및 제30조에 따른 일반대학원, 전문대학원, 특수대학원 및 대학원대학 ※ 원격대학(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제외
기타	<input type="checkbox"/> 서울특별시 소재 대학교 재학생(복학 및 입학예정자 포함)만 대학생으로 신청 가능 <input type="checkbox"/> 공고일 현재 최종 학기 재학 중인 경우 입주일과 무관하게 대학생으로 신청 (모든 학기를 이수한 졸업유예자, 수료자는 대학생 및 대학원생으로 신청 불가) <input type="checkbox"/> 복학(입학)예정자는 휴학증명서(입학증명서 또는 등록금납부확인서) 및 각서를 제출하고 복학(입학) 후 즉시 재학증명서 제출(미제출 시 계약 취소 및 퇴거조치) <input type="checkbox"/> 입학예정자의 경우 최종 합격자로서 자격별 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 지원 가능 <input type="checkbox"/> 재학 중인 학교가 위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증빙을 요구하는 경우 신청자가 직접 제출하여야 함

• 청년 유형 관련 세부 기준

나이	<input type="checkbox"/>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등본 상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본 공고의 경우 1986. 6. 27. ~ 2007. 6. 26. 출생자 지원 가능)
기타	<input type="checkbox"/> 직장 재직여부 무관(순위 별 소득요건은 충족하여야 함) <input type="checkbox"/> 대학생 및 대학원생도 청년 유형 선택하여 지원 가능

■ 신청 순위

순위	유형	자격	상세 요건
1순위	대학생 및 대학원생	생계·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가구	<input type="checkbox"/>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급여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는 수급자 가구 ※ 시설에서 급여를 실시하는 보장시설 수급자도 신청 가능 ※ 수급자 자격 인정 범위: 신청자 본인, 혹은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표에 등재된 신청자의 부모
		지원대상 한부모 가족	<input type="checkbox"/>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신청자 본인이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차상위계층 가구	<input type="checkbox"/>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0호에 해당하는 차상위계층 가구 ※ 차상위계층 자격 인정 범위: 신청자 본인, 혹은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표에 등재된 신청자의 부모
2순위	대학생 및 대학원생	일반	<input type="checkbox"/> 본인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3순위	청년	일반	<input type="checkbox"/> 본인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 동일순위 내 경합 시 우선순위 결정방법 : 전산 무작위 추첨

■ 무주택자(본인)

- 무주택 요건 충족은 본인에 한하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따라 판단합니다.

■ 소득 심사 기준

- 신청자격 별로 무주택자 및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국토교통부 주택소유 확인시스템 및 범정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해당 기준 충족 여부를 조회합니다.
- 아래 월평균 소득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금액으로서 기준금액에 1인가구는 20%p 가산한 금액입니다.

기준		1인가구(+20%p)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원)	100% 이하	4,576,036

- 1순위 신청자는 순위자격을 입증하는 경우 별도의 소득 심사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 2순위 · 3순위 신청자의 소득의 경우 1인 가구 기준으로 본인 소득을 심사합니다.
- 소득 산정방법
 - 소득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기타소득
 - ※ 월평균 소득은 가구원에 해당하는 세대원의 월평균 소득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해당 세대의 모든 소득(근로+사업+재산+기타)을 합산합니다.

구분	산정방법
소득	<p>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세대 구성원 전원의 아래의 12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p>*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간호수당,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의료지원금은 제외</p>

■ 장애인호실 우선배정 신청

- 장애인호실 우선배정을 신청하면 우선배정 대상 세대수 범위 내에서 동호배정 하되 신청자가 우선배정 대상 세대를 초과할 경우 무작위 전산추첨으로 진행합니다. 우선배정 신청 탈락자는 미신청자와 동일하게 동호배정하며, 장애인호실 희망자가 배정세대에 미달할 경우, 미신청자도 장애인호실에 배정될 수 있습니다.
- 신청자 본인이 다음 자격조건에 해당하여야 우선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해당 증빙서류는 서류심사 시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서류 미제출시 우선배정 신청이 취소됩니다.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

■ 모집일정(요약)

입주자 모집공고	인터넷 신청접수	서류제출	입주자격 검증	당첨자 발표	주택공개	계약체결	입주
2026. 6.26.(금)	2026. 7. 13.(월) ~ 7. 15.(수)	2026. 7. 21.(화) ~ 7. 27.(월)	2026. 8월~11월	2026. 11. 20.(금) 16:00	2026. 11. 30.(월) ~ 12. 4.(금)	2026. 12. 7.(월) ~ 12. 10.(목)	
인터넷	인터넷	등기우편	등기우편	당첨자 및 예비자 발표	공개주택 현장방문	· 전자계약 (인터넷) · 대면계약 (SH공사)	

- * 입주 기간: 2026. 12. 28.(월) ~ 2027. 2. 26.(금)예정
- * 인터넷청약 신청접수: 2026. 7. 13.(월) 10:00 ~ 7. 15.(수) 17:00
- * 서류심사 대상자 발표: 2026. 7. 20.(월) 예정
- * 서류제출: 서류심사 대상자에 한정, 등기우편 제출
- * 주택공개: 법정공휴일 및 주말은 주택방문 불가
- * 상기 일정은 **진행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입주자격 검증: 제출서류 심사, 소득 심사, 무주택 심사, 소명절차 등
- * 소득 및 주택소유 소명 대상자에게는 개별 안내 예정

(표4) 공급일정

공급단계	일정	내용
신청접수 (온라인)	'26. 7. 13.(월) 10:00 ~ '26. 7. 15.(수) 17: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모바일) 청약 신청을 원칙으로 합니다. -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인터넷청약시스템(www.i-sh.co.kr/app)에 접속 (PC 및 모바일 가능) • 청약신청기간 중 24시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시작일과 마감일은 제외) • 청약 시에는, 공동인증서(개인용) 또는 민간인증서(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토스인증서, KB국민인증서 등) 발급을 신청접수 이전까지 미리 완료하여야 합니다.
서류심사 대상자 발표	'26. 7. 20.(월) 16: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류심사 대상자는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합니다. - [인터넷청약시스템-대상자조회-제출-서류심사대상자 조회] 및 공지사항에서 확인 • ARS 조회 : 1600-3456 • 서류심사 대상자는 모집호수의 4배수를 대상으로 선정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류심사 탈락자 또는 미계약자가 다수 발생하는 경우, 서류심사 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은 신청자 중 일부를 추가 서류심사 대상자로 선정·발표하고, 별도로 정한 기간 내 서류를 제출받아 심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심사서류 제출	'26. 7. 21.(화) ~ '26. 7. 27.(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출기간 내 서류 미제출시 별도 연락 없이 탈락되므로 서류심사 대상자 발표일에 대상자 해당 여부를 홈페이지를 통해 반드시 신청자 본인이 직접 확인한 후 관련 심사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심사서류 제출기간 : 2026. 7. 21.(화) ~ 2026. 7. 27.(월) ※ 2026. 7. 27.(월) 우체국소인분까지 유효하게 접수 처리함 • 제출방법 : 등기우편(방문제출, 일반우편 제출 불가) - 제출주소 : (06336) 서울시 강남구 개포로 621,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1층 매입주택공급부 청년기숙사 담당자 앞
자격검증 및 소명안내	2026. 8. ~ 2026. 11. (대상자에 개별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주택 및 소득 기준(신청순위별 상이)을 충족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 주택소유 확인시스템을 통하여 신청자의 주택소유 여부를 조회하고, 보건복지부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소득 조회 대상의 소득을 조회하여 입주자격 충족 여부를 검증합니다. • 주택, 소득 등 전산검색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 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입주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최종 입주자발표	2026. 11. 20.(금) 16: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홈페이지 : 당첨결과 조회 또는 게시판 공지사항 확인 • ARS 조회 : 1600-3456
사전점검	'26. 11. 30.(월) ~ '26. 12. 4.(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종 당첨자를 대상으로 한 주택공개입니다. • 공개기간 내 관할 주거안심종합센터에 연락하여 열람 방법 협의 후 방문하실 수 있습니다. ※ 법정공휴일 및 주말은 주택방문 불가
계약체결	'26. 12. 7.(월) ~ '26. 12. 10.(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라인(전자)계약 기간: 2026. 12. 7.(월) ~ 12. 9.(수) • 방문 계약 기간: 2026. 12. 10.(목) 10:00~17:00 (12:00~13:00 점심시간 제외) • 방문 계약 장소: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1층 매입주택공급부
입주	'26. 12. 28.(월) ~ '27. 2. 26.(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잔금 고지서 상의 계좌로 잔금 납부 후 입주가 가능하며, 반드시 입주 전 관할 주거안심종합센터로 유선 연락하여 입주일자를 협의해야 합니다.

4

청약 신청 방법

■ 신청접수(인터넷 청약)

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6. 7. 13.(월) 10:00 ~ 2026. 7. 15.(수) 17:00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 청약 •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인터넷 홈페이지(www.i-sh.co.kr)에 접속 → 인터넷 청약 시스템 → 인증서 로그인 → 공고선택 → 단지선택 → 신청자격 확인 → 인적사항 작성 및 청약서약 → 인증서 확인 → 나의 청약내역 확인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인 1주택만 신청 가능합니다.(중복 신청 시 전부 무효 처리) • 금융기관(인터넷뱅킹) 및 6대 인증기관(금융결제원, 코스콤, 한국정보인증, 한국전자인증, 한국무역정보통신, 이니텍) 인증서로 인증 가능합니다. • 주소지(주택형) 단위로 신청가능하며 호실은 전산 추첨하여 무작위 배정됩니다. • 청약접수 시 도로명 주소 사용을 권장합니다. • 신청 당시 입력한 전화번호 및 주소로 안내문을 발송하므로 반드시 수신 가능한 연락처를 입력해야 합니다.(잘못된 수신처 입력 또는 연락처 변경 등의 사유로 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 그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신청 마감시간까지 신청 완료(저장)하여야 하며, 최종 확인 완료 시 수정이 불가능하고 신청 후 취소는 마감 전까지만 가능합니다. • 신청 접수번호 및 신청 내역 등을 별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 방법

"24시간 인터넷 청약, 스마트폰으로도 OK!"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청약 신청은 새로운 주소(도로명 주소)로만 청약접수 받습니다.
반드시 새로운 주소(도로명주소)로 청약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 사전 준비사항

- 인터넷 청약을 위해 사전에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서(11종) 중 1개를 구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서명법 개정에 따라 공인인증서가 공동인증서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 본 청약 시 공동인증서는 인터넷뱅킹을 위하여 금융기관에서 발급한 인증서나 6대 인증기관[금융결제원, (주)코스콤, 한국정보인증(주), 한국전자인증(주), 한국무역정보통신(주), 이니텍]의 공동인증서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들 기관에서 발급받은 공동인증서를 소지하셔야 인터넷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본 청약 시 간편인증서는 네이버, 카카오, 패스(PASS), 삼성패스,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SOL),뱅크샐러드, 토스, 우리은행, 농협은행에서 발급받은 간편인증서만 사용 가능합니다.(총11종)
- 신청자격, 가점사항 등 입력사항에 대해 가급적 사전에 직접 해당서류 등을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신청 시 최종확인 완료 이후에는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 인터넷 청약기간

- 인터넷 청약기간은 2026. 7. 13.(월) 10:00 ~ 7. 15.(수) 17:00이며 청약마감 시간까지 신청을 완료(저장 기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신청하지 마시고, 미리 인터넷에 접속하여 여유 있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 순서

-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인터넷청약시스템(www.i-sh.co.kr/app)에 접속(PC 및 모바일 가능)
- 신청순서 : SH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홈페이지 인터넷청약시스템(www.i-sh.co.kr/app)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공고선택 → 단지선택 → 신청자격 확인 → 인적사항 작성 및 청약서약 → 인증서 확인 → 나의 청약내역 확인

○ 인터넷 청약시 유의사항

- 일반PC로 청약한 것을 스마트폰으로, 스마트폰으로 청약한 것을 PC로 취소 후 재청약 할 수 있습니다.
- 청약 시 최종확인 완료하시면 수정이 불가능하고 신청 후 취소 및 재신청은 청약 신청 마감일시까지만 가능합니다. 또한 인터넷 청약 마감일 전에는 야간에도 인터넷 청약이 가능하오니 미리 인터넷에 접속하여 여유 있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내용이 다른 경우[자격요건(해당신청 자격, 무주택여부 등), 주민등록번호 등] 신청 자격 결격 되오니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공고문이나 홈페이지에 게시한 공고내용을 정확히 숙지한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시 착오 등으로 본인이 기입한 내역은 절대 변경 불가능합니다.(형평성을 고려하여 본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변경 불가)
- 신청자격, 가점사항 등 입력사항에 대해 가급적 사전에 직접 해당서류 등을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신청 시 최종확인 완료 이후에는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 접속자 폭주 등으로 일시적인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경우에는 원활한 청약신청접수를 위하여 접속자가 몰리지 않는 시간대에 다시 접속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청약마감 시간까지 신청을 완료(저장 기준)하여야 하며, 신청마감일에는 접속이 몰려 시스템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미리 인터넷에 접속하여 여유 있게 청약신청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위 기재로 신청한 경우 결격 되오니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

서류제출 안내

- 서류심사대상자에게 별도의 등기우편 안내문을 발송하지 않으며 홈페이지 명단 게시 및 ARS 조회로 서류심사대상자 해당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 **모집공고일(2026. 6. 26.) 이후 발급한 서류만 인정되며,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제출 서류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가 모두 표시**되도록 합니다.(주민등록번호 표시 예시 : 900101-1234567)

■ 서류심사대상자 발표 및 심사서류 제출방법

서류 심사 대상자 발표	일시	□ 2026. 7. 20.(월) 16:00 예정
	방법	□ 홈페이지(공지사항) 명단 게시 □ 홈페이지 서류심사대상자 조회/ARS 조회
	선정 기준	□ 신청순위가 높은 순으로 공급호수의 4배수를 서류심사대상자로 선정합니다. □ 신청자가 공급호수의 4배수를 초과하게 될 경우, 1순위 신청자를 우선으로 선정하고 동일순위 내 경합이 있을 경우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합니다. □ 서류심사 탈락자 또는 미계약자가 다수 발생하는 경우, 서류심사 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은 신청자 중 일부를 추가 서류심사 대상자로 선정·발표하고, 별도로 정한 기간 내 서류를 제출받아 심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서류 제출	기한	□ 발송: 2026. 7. 21.(화) ~ 2026. 7. 27.(월) 이내 소인 분까지 유효
	방법	□ 등기우편 제출(방문제출, 일반우편 제출 불가)
	주소	□ (06336)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1층 매입주택공급부 청년기숙사 담당자 앞
	유의 사항	□ 등기우편 외의 방법(일반우편 포함)으로 접수 불가하며, 제출 기간 이외 소인분은 접수하지 않습니다.(별도 안내 없이 탈락) □ 서류심사대상자의 서류제출이 없더라도 별도 연락을 하지 않습니다. □ 서류는 원본 제출이 원칙이며, 원본을 제출할 수 없는 서류에 한해 사본 제출을 허용합니다. □ 제출서류와 신청내용이 서로 다르거나 필요서류가 누락된 경우 서류심사 시 결격 처리되므로 공고내용을 정확히 인지하고 해당서류 등을 직접 확인한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필요 시 보완서류 제출을 요청드릴 예정이며 (부재중, 해외체류, 수신거부 등으로 인한) 연락 불가 시 탈락 처리합니다. □ 서류 미제출 및 오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제출서류 발급 불가 등의 사유로 신청접수기간 이후 순위 변경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 공급담당부서 이외의 콜센터 등과의 상담 내용은 필요 서류 및 서류심사의 기준이 될 수 없으므로 반드시 본인이 직접 제출 서류를 확인하신 후 서류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

※ 모든 서류는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된 것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심사 후 반납하지 않습니다.
(탈락자 서류는 전형 종료 후 일괄 폐기)

○ 공통 제출서류: 서류심사대상자 전원 제출

제출서류	내용	발급처
주민등록표등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 ※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전입일/변동일 등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행정복지센터
가족관계증명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청자 본인의 가족관계 증명서(본인 기준 상세발급)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기되도록 발급 	행정복지센터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의방법) 동의서 내용을 확인하고 신청자 본인 정자체 서명 ※ (주의) 모든 동의란에 체크 필요 	별도양식

○ 본인의 신청 자격(순위)에 따른 제출서류

해당 자격	제출서류 및 내용	발급처
1순위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증명서 ※ 신청자 본인 혹은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표에 등재된 부모에 한함 	행정복지센터
1순위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증명서 ※ 신청자 본인 기준 발급 서류에 한함 	행정복지센터
1순위 차상위계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 확인서, 복지대상급여(변경)신청결과 통지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증명서, 자활근로자 확인서, 장애수당 대상자 확인서,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확인서 등 차상위계층 확인이 가능한 서류 ※ 신청자 본인 혹은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표에 등재된 부모에 한함 	행정복지센터
1순위, 2순위 대학생·대학원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학생: 재학증명서 휴학생(복학예정자): 휴학증명서, 공사양식 각서(재학증명서 미제출 시 퇴거 서약), 재학증명서(복학 후 1개월 이내 관할 주거안심종합센터 제출) 입학예정자: 입학증명서 또는 등록금납부확인서, 공사양식 각서(재학증명서 미제출 시 퇴거 서약), 재학증명서(입학 후 1개월 이내 관할 주거안심종합센터 제출) 	해당교육기관 붙임양식
3순위 청년 (19세-39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년 자격증명 관련 별도 제출 서류 없음 	

○ 추가 제출서류 : 신청자가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

해당 경우	제출서류 및 내용	발급처
장애인호실 우선배정 신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애인(본인) : 장애인증명서 ※ 장애인호실을 신청한 신청자 본인에 한함 	행정복지센터

6

입주자 선정 방법

■ 입주자격 부적격 소명

일시	□ 2026년 9월~11월[소득·주택소유 조회 회신 시기에 따라 변경 가능]
방법	□ 주택소유 및 소득 소명대상자 개별 통보 및 소명자료 등기우편 제출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조회된 금액을 입주자모집 공고일에 산정된 것으로 봅니다. □ 소득 소명 절차는 관련 기준 충족을 요하는 대상(2·3순위)에 한하여 진행됩니다. □ 소명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대상자에게 별도 통보 및 안내문을 송부합니다. □ 국토교통부 주택소유 확인시스템 및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주택 소유 및 소득 전산조회 결과가 신청내역과 다른 소명 대상자는 소명 대상으로 선정되며, 전산조회 결과가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 내에 객관적인 증명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기간 내에 증명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및 제출한 소명자료가 소명이 되지 않을 경우는 탈락 처리합니다.

■ 입주자 선정방법

입주자 선정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순위 → 추첨 □ 신청 시 본인이 입력한 신청순위를 기준으로 순위 간 경합이 있을 시에는 상위 순위를 우선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순위 내 경합이 있을 시에는 전산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당첨자 선정 및 호실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류 심사, 소득 심사, 무주택 심사의 적격자가 최종 입주자 선정 추첨의 대상이 되며, 신청자 본인이 신청한 주택 단위로 경쟁 및 입주자 선정이 이뤄집니다. □ 선정된 당첨자의 호실배정은 전산 무작위추첨에 의해 이뤄지며, 배정된 호실 이외로 동호변경은 불가합니다.
예비자 선정 및 공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급호수의 2배수 내를 예비자로 선정하며, 미계약·계약취소·계약 후 미입주 등으로 공실 발생 시 예비순번대로 공급합니다. (예비순번 유효기간은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 예비자 공급은 상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공고를 통해 순차적으로 진행됩니다

7

최종입주자 발표 및 계약안내

입주자 발표(예정)일	<p>2026. 11. 20.(금) 16:00 예정</p> <p>※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홈페이지에 게시 예정입니다.</p>
확인방법	<p>□ 공사 홈페이지 우측 메뉴 [인터넷청약시스템] → 대상자 조회·제출 → 당첨자 조회</p> <p>□ 공사 콜센터 ARS 당첨자 조회 : ☎1600-3456</p> <p>□ 공사 홈페이지(공고 및 공지) 명단 게시</p> <p>□ 계약 안내문 발송</p>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종 당첨자에게 계약안내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할 예정입니다. • 신청자의 인적사항 변경(개명 등), 연락처 및 주소 변경 등으로 등기우편이 도달하지 않는 사례가 있으므로,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반드시 우리 공사에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산 무작위추첨에 따라 배정된 호실 이외(공실여부 관계없음)로 호실 변경 입주는 불가합니다. • 당첨자로 선정되었더라도 입주부적격 사유가 있을 시 추가 소명절차를 거치지 않고서는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탈락 처리합니다. • 당첨사실을 확인하지 못해 계약하지 못한 경우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8

계약 및 입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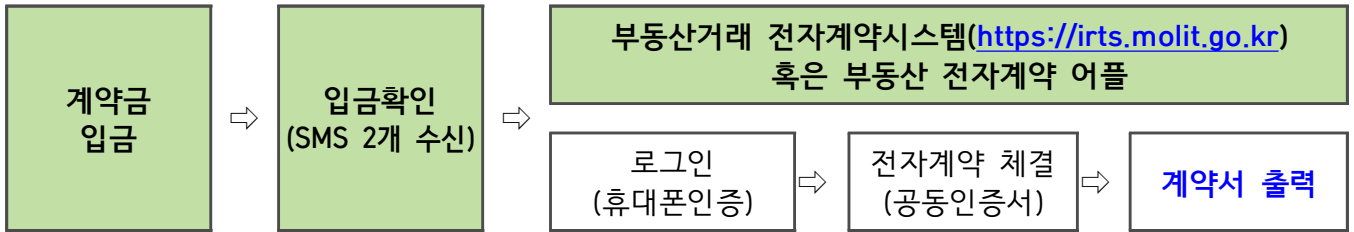
■ 당첨자 주택공개(주택 사전점검)

공개기간	<p>□ 2026. 11. 30.(월) ~ 12. 4.(금) [공개시간: 10:00-16: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p> <p>※ 법정공휴일 및 주말은 주택방문 불가</p>
공개절차	<p>□ 공개기간 중 관할 주거안심종합센터에 유선 연락하여 열람 방법 협의 후 해당주택을 열람 해야 합니다.(개별 임의 방문 불가)</p> <p>□ 당첨된 주택에 방문하여 사전점검 후 “주택사전점검표”를 제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라인(전자)계약 시 관할 주거안심종합센터에 유선 연락 후 주택사전점검표 제출 - 방문(서면)계약 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매입주택공급부에 주택사전점검표를 직접 제출 <p>□ 지역별 관할 주거안심종합센터 연락처: 10. 문의처(21p ~ 22p) 참고</p>
유의사항	<p>□ 입주대상자에 한해살이 본인이 당첨된 주택만 확인 가능합니다.(당첨 주택 외 타주택 방문이나 입주대상자가 아닌 경우 공개 불가)</p> <p>□ 주택 공개일을 협의하기 위한 시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p>

■ 계약

○ 온라인(전자)계약 기간: 2026. 12. 7.(월) ~ 2026. 12. 9.(수)

[계약체결 절차]



※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계약하는 경우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됩니다.

※ 우리공사의 입금확인은 온라인(전자)계약 기간 동안 업무시간에 한하여 확인 가능하며, 계약금 입금 후 우리공사의 입금확인 및 SMS 발송까지는 일정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전자계약시스템에 정보가 전송되는 시간이 다소 걸리므로 입금 후 약 1시간 이후에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전자계약 체결(전자서명)은 우리공사의 입금확인 문자와 한국부동산원의 문자 수신 후 온라인 전자계약 기간 내 상시 가능합니다.

○ 방문(서면) 계약 기간: 2026. 12. 10.(목) 10:00~17:00(12:00~13:00 점심시간 제외)

장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1층 매입주택공급부(3호선 대청역 8번 출구)			
계약체결	□ 계약 시 아래 구비서류 지참 후 방문계약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 등기 발송된 고지서 상 당첨자 전용 가상계좌로 계약금 납부 후 증빙 지참하여 방문해야 합니다.(계약 시 공사에 계약금 납부 불가) □ 계약체결은 본인이 하는 것이 원칙이나, 직계가족이 대리할 경우에는 관계 입증 서류를, 제3자(대리인)가 대리할 경우 본인이 작성한 위임장을 제출하시면 계약진행이 가능합니다.			
구비서류	계약자 본인 내방 시	① 계약자 신분증 ② 계약자 도장(본인 내방 시 서명 가능) ③ 계약금납부 영수증 또는 계좌이체 확인증 등 입금 내역 확인 서류 ④ 매입임대주택 생활수칙 및 동의서(공사 소정양식) ⑤ 주택사전점검 확인서		
	직계가족 또는 제3자(대리인) 내방 시	위의 본인 내방 시 구비서류(①~⑤) 외	직계가족 대리 시	㉓ 대리인 신분증 ㉔ 가족관계증명서
			제3자(대리인) 대리 시	㉕ 대리인(제3자) 신분증 ㉖ 위임장(계약자 인감날인) 1통 ㉗ 계약자 인감증명서 1통
미성년자 계약 시	위의 본인 내방 시 구비서류(①~⑤) 외	㉘ 법정대리인/미성년후견인 미성년자 임대차계약 동의서(공사 소정양식, 인감날인 必) ㉙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또는 기본증명서(상세) ㉚ 법정대리인/미성년후견인의 신분증(사본) ㉛ 법정대리인/미성년후견인의 인감증명서		

※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의 경우 전자계약 및 제3자(대리인) 대리계약 불가

■ 입주

기 간	□ 2026. 12. 28.(월) ~ 2027. 2. 26.(금)
안 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잔금 고지서 상의 계좌로 잔금 납부 후 입주 가능하며, 반드시 입주 2주(14일) 이전 관할 주거안심종합센터로 유선 연락하여 입주일자를 협의해야 합니다. □ 대출 관련 사항은 공사에서 관여하지 않으며 해당 금융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주택의 입주예정자가 주택도시기금의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입주하기 전까지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대출금의 목적물을 우리공사 매입임대주택으로 변경한 후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제16조) □ 공공임대주택 중복입주는 불가능하므로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당첨 주택에 입주하기 전에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 하여야 합니다. □ 신청자 본인만 입주 가능합니다.

9

기타 유의사항

관련항목	유의사항
기본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자의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매입주택공급부에 유선(☎1600-3456)으로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나 주소 변동사항을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매입주택공급부에 통보하지 아니하여 모집공고 관련 안내를 송달받지 못하여 추가 서류 또는 소명자료를 미제출하거나 계약 불참하는 경우 그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본인이 기혼자,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인 경우 신청할 수 없습니다.
주택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대주택의 현황 및 입지환경 등 제반사항은 반드시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하신 후 계약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택 미확인으로 인한 이익제거나 동호변경은 불가합니다.
인터넷 청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인 1주택만 신청 가능하며, 복수 주택 중복 신청 시 전부 무효처리 됩니다. • 공고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여 신청자격, 소득 등 입력사항에 대해서는 가급적 사전에 본인이 직접 해당 서류 등을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가 신청(입력)한 내용을 근거로 당첨여부가 결정되므로 누락 및 착오 입력(순위 등을 실제보다 낮게 기재 등에 따른 당첨 탈락, 청약 시 입력한 내용과 제출서류 내용이 다르거나 허위 신청(입력)으로 인한 당첨 취소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념하시어 정확하게 입력(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일자별 마감시간까지 접수완료(저장 기준)하여야 하며, 접속자 폭주 등으로 인하여 예상하지 못한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마감이 임박하기 전에 미리 여유 있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기간 중에는 신청자격, 순위, 소득구간 등 신청내용을 변경(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으나, 마감시간 종료 후에는 변경이 불가합니다. • 시스템 장애 발생 가능성을 감안하시어 정상적으로 접수하신 내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소지(주택형) 단위로 신청가능하며 호실은 전산 무작위 추첨하여 배정합니다. • 입주지정기간만료일 직후 최초 도래 학기 복학 예정자 또는 입학 예정자의 자격으로 신청한 사람은 공사 양식 각서(재학증명서 미제출 시 계약 취소 및 퇴거 서약) 및 재학증명서를 반드시 제출(입·복학 후 1개월 이내)해야 하며, 입학예정자의 경우 최종합격 증빙 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 지원 가능합니다. • 신청 시 입력한 주소 및 연락처로 등기우편과 문자(SMS)를 발송하므로 반드시 수신 가능한 연락처를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관련항목	유의사항
제출서류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류심사대상자로 선정이 되었더라도 반드시 서류를 제출하여야 다음 전형 진행이 가능하며, 서류미제출 탈락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신청 전형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정확히 제출해주시기 바라며 서류 오제출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 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이 불가합니다.(탈락자 제출서류는 심사 종료 후 일괄 폐기)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에 발급된 것이어야 하며, 다른 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는 직인이 날인된 원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원본 제출이 원칙이나 원본을 제출할 수 없는 서류에 한해 사본 제출을 허용합니다. • 제출한 서류가 위조 또는 사실과 다르거나 결격 사유가 있는 경우 당첨이 취소됩니다.
소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 및 무주택 소명 절차는 관련 기준 충족을 요하는 순위에 한하여 진행되며 대상자에게 별도 안내문을 송부합니다. • 국토교통부 주택소유 확인시스템 및 범정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주택소유, 소득 전산조회 결과가 신청내역과 다른 신청자는 소명대상자로 선정되며, 전산조회결과가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 내에 객관적인 증명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주자격 조사결과 부적격 사유에 대한 소명 의무는 신청자 본인에게 있으며 기간 내에 증명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및 제출한 소명자료가 소명이 되지 않을 경우는 탈락 처리됩니다.
입주자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집공고일(2026. 6. 26.) 현재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갖춘 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입주자 모집공고일로부터 임대차계약 만료일까지 무주택자 요건(본인)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 및 판정 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를 준용합니다. • 수급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차상위 계층의 경우 소득 검증을 하지 않습니다.
당첨자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떠한 경우에도 최종 발표일 이전에 결과를 알려드리지 않으며 모든 신청자의 전형 종료 후 (소명 절차 등) 일괄 발표 합니다. • 공급호수의 2배수 내를 예비자로 선정하며, 미계약·계약취소·계약 후 미입주 등으로 공실 발생 시 예비순번대로 공급합니다.(유효기간은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 예비자 공급 대상자에게는 해당 예비자 공급 시기에 개별적으로 연락드립니다. • 입주자 당첨 이후 연락처(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될 경우, 즉시 그 내용을 우리 공사에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미통보 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계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종 입주대상자라도 입주자격 관련 추가 소명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완료 하여야 계약 체결 및 입주가 가능합니다. • 미계약취소 등으로 인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 계약금을 환불받기 위해서는 신분증,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통장사본 제출이 필요하며, 입주지정 종료일 전까지 계약해지 신청하여야 공제금액이 발생하지 않습니다.(관할 주거안심종합센터에서 신청가능) • 기숙사형 청년주택은 최초 2년 계약 후 2년 단위로 4회 재계약이 가능(총 10년)하며, 소득 조건을 제외한 입주자격을 유지하여야 갱신계약이 가능합니다. • 신청유형이 변경(대학생·대학원생 ↔ 청년)되어도 재계약이 가능하나 변경된 자격에 따른 임대조건으로 갱신 계약해야 합니다.

관련항목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대차 기간 중에는 자격요건 상실 여부와 관계없이 잔여기간 동안 거주가 가능합니다. • 본 공고의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적용되며, 재계약 시점에 임대주택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 계약은 임대보증금↔월임대로 전환 전의 최초 금액으로 해야 하며, 임대보증금↔월임대로 전환은 계약 이후(입주 전) 관할 주거안심종합센터에서 진행 가능합니다. • 기본(할증)임대료의 80%까지 임대보증금으로 전환 가능하며, 임대보증금의 임대료 전환(임대보증금의 최대 60%까지)도 가능합니다. •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은 계약 시까지 입주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주택도시기금 대출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숙사형 청년주택은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주택을 매입하여 공급하는 임대주택으로 주택도시기금에서 다른 대출금을 대출받은 경우 이를 상환하여야 입주가 가능합니다. (대출여부 조회하여 대상자에게 별도 통보하며 상환 증빙서류 제출 필요. 단, 주택도시기금 대출을 받았으나 해당 은행이 공사 매입임대주택으로 대출 목적물 변경승인이 가능한 경우 상환이 필요 없으며, 세부사항은 해당 은행과 사전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전세자금은 주택도시기금 취급은행에서 대출받으실 수 있으며, 신용상태 및 대출한도를 은행과 미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우리 공사는 금융권 대출 관련 문의를 받지 않으며, 금융권 대출을 위한 계약서 내용(동호표기 및 면적 등) 수정은 불가능합니다.]
입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자 본인만 입주 가능하며, 입주 후 관할 지역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본인이 공공 임대주택(타 청년 매입임대주택 포함)의 기 당첨자인 경우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퇴거)하는 조건으로 기숙사형 청년주택에 입주할 수 있습니다.(최종 입주자 발표 후 해당자 별도 통보 및 입주 전 관할 주거안심종합센터 최종 확인) • 입주자가 계약체결 및 입주 이후라도 주택(분양권 등 포함)을 소유한 사실이 있을 경우 임대차계약은 해지되고 퇴거하여야 합니다.
생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주택 특성 상 층간소음·생활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사유로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한 동호 교환 및 공실로의 동호이전 등은 불가능합니다. • 공동생활 위해행위(남녀혼숙 등 사회적 문란행위, 향정신성 의약품 음용, 상습 음주 및 흡연, 고성방가 및 소음 발생 행위, 냄새 및 악취 발생원인 제공 행위, 동물을 키우는 행위, 도박, 친구나 친척 등의 잦은 방문으로 다른 입주자의 생활불편을 초래, 타 입주자에게 위협적인 행동을 가하는 행위 등)로 다른 입주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을 지속할 시 갱신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별도의 관리비가 발생하므로 계약 전 관할 주거안심종합센터를 통해 예상 공용 관리비를 반드시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 퇴거 시 세대 전용부분 시설물에 대한 파손(고장)이 있을 경우 원상회복하거나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 태양광 미니발전소가 기 설치된 세대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당해 시설물을 철거할 수 없으며 현 상태로 유지하여야 합니다.

관련항목	유의사항
커뮤니티실 공동체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부 주택에는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커뮤니티실 공간이 존재하여 향후 해당 공간을 활용하여 공동체 활동 등 입주자 자치활동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 공동체 활동의 운영 및 공동체 공간 사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도요금, 전기요금 등의 비용은 입주자들이 공동으로 부담하게 됩니다. • 입주민은 주택의 쾌적한 주거환경 유지를 위해 공동체 공간에 대한 공동생활 질서 의무(소음, 무단투기, 건물 내 흡연 등 금지)가 있습니다.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대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개축·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본래의 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계약 해지될 수 있습니다. • 주택의 공급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임대주택에 출입할 수 있으며, 입주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공주택 특별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택임대차보호법」,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등 관련 법령과 고시·지침에 따릅니다.
양도 전대 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주택은 분양 전환되지 않는 임대주택으로 양도 및 전대할 수 없으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임차권을 양도·전대·알선한 자는 관련법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4를 위반하여 공공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공공임대주택을 전대하는 임차인은 당첨된 날로부터 4년간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이 제한됩니다.(입주 후에도 전대 확인 시 퇴거 조치합니다) • 공공임대주택을 숙박시설로 사용하거나 숙박공유 사이트에 등록하여 단기 임대하는 등의 행위는 「공공주택 특별법」을 위반하는 행위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 상기 기술한 바와 같이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대표전화 :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콜센터 (☎ 1600-3456)

■ 주택공개, 주택입주, 상호전환, 재계약 : 관할 주거안심종합센터

기 관	관할 자치구	전화번호
	주 소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콜센터	-	1600-3456
성북·강북 주거안심종합센터	성북구, 강북구	(02)944-8000~1
	강북구 도봉로 358, 코스타타워(삼양신탁본점) 11층	

우리공사에서는 입주자 모집공고와 관련 콜센터 등을 통하여 상담을 시행하고 있으나, 청약자 개인의 다양한 정보나 상황에 대한 자료 없이 상담을 진행하오니 청약과 관련한 방문 및 전화상담은 참고로만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6. 26.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SH 기숙사형 청년주택 운영 규정>

SH 기숙사형 청년주택 운영 규정	
<p>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이하 “공사”라 한다)가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하여 직접 공급 및 운영하는 기숙사형 청년주택(이하 “기숙사”라 한다)의 입주 기간 중 질서 있는 공동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지켜야 할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 (입주) ① 입주가 승인된 자(이하 “입사자”라 한다)는 생활관 입주 절차에 따라 서약서를 기숙사 관리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입사자는 거주에 따른 사용료(임대료, 관리비 및 공동생활 유지를 위해 필요한 제반 비용을 말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사용료의 산정 기준, 항목 및 납부 방법은 공사가 별도로 정하며, 소장은 이를 기숙사 내 누구나 확인할 수 있는 장소에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이 때 입사자는 비치된 서류에 대해 상시 열람하거나 복사를 청구할 수 있다.</p>	
<p>제3조 (주택 배정) ① 기숙사 동호의 배정은 공사 사장이 결정하고, 소장은 입사자가 동호 배정에 따라 입주하는 것을 확인한다. ② 배정된 기숙사 동호는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p>	
<p>제4조 (통신) 일반우편물은 수취함에서 본인이 직접 수령하고, 특수우편물(등기, 소포, 택배)은 관리실에서 수취인이 직접 서명한 후 수령 한다.</p>	
<p>제5조(취사) 입사자가 취사를 할 때에는 지정된 장소에서 실시하고, 취사 후에는 정리 정돈 및 화기 점검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p>	
<p>제6조 (외부인 출입제한) ① 입사자 이외의 자는 기숙사 출입 및 숙박을 할 수 없다. ② 외부인의 기숙사 출입은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관리사무소에 비치된 출입대장 기재 후 소장으로부터 출입증을 발부받아 허용한다.</p>	
<p>제7조 (생활점검) ① 기숙사의 건전한 생활유지를 위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생활 점검 및 인원 파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생활 점검 시 사전에 입주생에게 고지하여야 하며, 가능한 입주생이 원하는 일정에 맞춰 점검을 실시하도록 한다.</p>	
<p>제8조 (공고문 게시 및 통지) ① 소장은 전 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고 사항이 있는 경우, 입사자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게시판 등 지정된 장소에 공고문을 게시하여야 하며, 입사자는 이를 확인하고 숙지할 의무가 있다. ② 공고문은 게시된 때로부터 48시간이 경과하면 주지된 것으로 본다. 다만, 장기 외출 등으로 인해 제1항의 공문을 확인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입사자는 소장에게 별도로 기간을 정하여 문자메시지, 전자우편(E-mail) 등 모바일 매체를 통한 개별 송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정된 모바일 매체가 도달된 시점에 확인한 것으로 간주한다.</p>	

SH 기숙사형 청년주택 운영 규정

제9조 (퇴거승인)

- ① 공사와 계약한 계약기간(2년) 내 학기 중 휴학자 또는 자진퇴거, 방학 등으로 인한 귀향, 군복무 등 퇴거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퇴거 15일 전 계약해지신청서(소정양식)를 제출하여 관할 주거복지센터장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 ② 퇴거 시에는 소장으로부터 비품의 파손 및 청소 상태 등을 확인받은 후 문제가 없을 시 출입 카드·열쇠 등 기타 지급품을 반환함으로써 최종 퇴거 처리가 이루어진다.

제10조 (입사자 준수 및 협조의무)

- ① 입사자는 기숙사형 청년주택 운영 규정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생활관 및 부속시설을 보호하여야 한다.
- ② 공사 및 관리주체는 본 기숙사의 시설 유지보수 및 안전 점검 등의 조치를 위해 입사자에게 필요한 사항을 협조 요구할 수 있으며, 입사생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③ 공사 및 관리주체는 본 기숙사의 원활한 관리 운영 및 실태조사를 위해 입사자에게 필요한 사항을 협조 요구할 수 있으며, 입사생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 (통보의무)

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소장에게 알려야 한다.

1. 생활관 또는 부속시설을 파손 또는 훼손하였을 때
2. 화재, 풍수해, 도난, 긴급환자 등 이변이 발생하였을 때
3. 생활관내 또는 부근에 전염병 환자가 발생하였을 때
4. 기타 이에 준하는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제12조 (변상)

입사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이나 기물을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13조 (금지사항)

입사자는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금지사항 위반행위가 계약해지사유 또는 범법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계약 및 위반 법률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사용권의 양도, 전대, 외부인의 숙박 또는 이와 유사한 행위
(배정된 기숙사 동호를 입사자가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2. 기숙사 시설 내에서 타인에게 신체적, 언어적, 성적 폭력의 행사
3. 기숙사 및 그 부속시설의 구조·위치 변경 등 원상을 훼손하는 행위
4. 기숙사 시설 내에서 위험물을 사용하거나 보관하는 행위
5. 애완동물을 사육하는 행위(단, 시각장애인 보조견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함)
6. 영리 목적의 사용 또는 상행위 등 기숙사를 그 용도에 부합하지 않는 방법으로 사용하는 행위

제14조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입사자가 위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할 주거복지센터장은 소장을 통하여 서면훈계, 서면경고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고, 계약해지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퇴소조치를 할 수 있다.

제15조 (서약서 작성의무)

기숙사 입사 시에 본 규정을 숙지하였음에 대한 서약서를 작성하여 소장에게 제출한다.

별표1.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 확인방법

세대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국가 및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공적자료를 조회하여 모집공고일 이후 주택소유 여부를 확인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과세자료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
 - *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주택에 대한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 분양권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

■ 주택 및 분양권등의 소유 기준일

- 주택의 경우(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미등기 주택인 경우에는 건축물대장등본상의 처리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분양권등의 경우

1.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상 공급계약체결일
2. (분양권등의 매매가 이루어진 경우)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상 매매대금 완납일
3. (분양권등의 상속·증여 등이 이루어진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 상 명의변경일

■ 주택 및 분양권등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

* 무주택으로 인정되더라도 자산(부동산) 가액에는 포함하여 산정됨.

- ①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 ②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가.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 나. 85㎡ 이하인 단독주택
 - 다. 소유자의 본적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통하여 확인 가능합니다.
-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완료 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④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⑤ 20㎡ 이하의 주택(20㎡ 이하 주택에 대한 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 제외)
- ⑥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남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⑦ 무허가 건물(중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소유자가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함)
 - * 소명방법 : 해당 주택이 2006.5.8 이전 건축법 제8조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없이 건축된 연면적 200㎡ 미만이거나 2층 이하의 건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8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내용의 민원 회신문을 해당 지자체(시·군·자치구)로부터 받아서 제출
- ⑧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은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단,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자는 제외되어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봄
- ⑨ 매매 외 상속·증여 등의 사유로 분양권등을 취득한 경우
- ⑩ 보유한 분양권등이 `18.12.11. 전에 입주자모집 승인, 「주택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사업계획승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계획승인을 신청한 사업에 의한 것인 경우
- ⑪ 주택공급 신청자가 임차인으로서 거주하던 임차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 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생애 최초로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한 주택(「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 및 제3조제1항제2호·제3호에 따른 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일 것
 - 나.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그 취득가격(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가격을 말한다)이 2억원(수도권은 3억원) 이하일 것
 - 다. 해당 주택의 취득일(제23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 중 빠른 날을 말한다) 전날까지 1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했을 것

별표2. 소득 산정방법, 항목 설명 및 자료출처

- 소득 정보는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되며, 이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입니다.

구분	산정방법
소득	<p>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아래의 12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p>*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간호수당,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의료지원금은 제외</p>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소득항목 설명 및 소득자료 출처

구분	항목	소득 및 재산 항목 설명	자료 출처	
소득	근로 소득	상시 근로 소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보험 보수월액 - 근로복지공단 월평균보수 [1)산재보험, 2)고용보험] - 국민연금 표준보수월액(소득신고) - 장애인고용공단자료(사업주의 고용장려금 신고자료/고용부담금 신고자료 : 근로소득) - 국세청종합소득(근로소득) 	
		일용 근로 소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 - 건설공사종사자(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제외) - 하역(항만)작업 종사자(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지급 명세서 - 고용노동부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자활 근로 소득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등 자활급여의 일환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	- 자활근로자 근로내역
		공공일자리 소득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에 참여한 대가로 얻는 소득	- 노동부 '일모아' 근로내역
	사업 소득	농업소득	<p>경종업(耕種業),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 등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p> <p>* 농업소득=국세청 종합소득+농업직불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농림수산물부 농지원부 - 농림수산물부 농업직불금

구분	항목	소득 및 재산 항목 설명	자료 출처
	임업소득	영림업.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어업소득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기타사업 소득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사업자등록증
재산 소득	임대소득	부동산.동산.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
	이자소득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
	연금소득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 - 금융정보 조회결과
기타 소득	공적이전 소득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 기타금품(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국방부퇴직, 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한국고용정보원 실업급여,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급여, 보훈처 보훈대상자명예수당, 보훈대상자보상급여 등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간호수당,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의료지원금은 제외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매입임대주택에 대해 알아봅시다



매입임대주택 유형별 정기 공고일정

일반
매입임대주택
2월 · 8월

청년
매입임대주택
6월 · 12월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3월 · 9월

장기
미입대주택
2월 · 8월

SH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